

Q & A

산업자원부 질의/회신

LPG사업에 대해 질의하고 이에
산자부가 회신한 내용을 게재한다.

LPG충전소 안전거리 적용 시점

Q 15년이상 경과된 지하매물저장탱크(프로판 10톤,부탄 10톤)를 교체(용량변경 없음)하고, 지하기계실(충전시설)을 지상 기계실로 변경하고자 하여 디스펜스(자동차용기 충전시설) 이전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안전거리를 적용받고 있는 거리는 21m의 절반인 10.5m를 적용받고 있으며 충전소 주의 15m 떨어진 곳에 보호시설이 있음

만일 위와같이 지하매물형 저장탱크교체·지상으로 기계실 이동, 디스펜스를 이전했을 때 적용받는 안전거리는 LPG법시행규칙 부칙

제3조에 의거 안전성 평가를 받을때 구법의 안전거리를 적용 받는지 아니면 현행법(시행규칙 별표 3의1-가)에 (1)-라 항목에 적용을 받는지 (7.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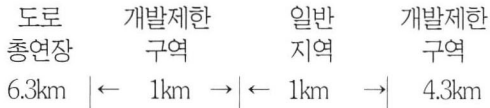
A 1999.4.1 이전에 허가를 득한 충전소의 경우, 저장설비의 교체설치는 99.4.1 시행된 LPG법시행규칙 부칙 제3조제1항에 의해 충전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기계실 및 충전기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은 동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호의 가스설비의 위치변경에 해당되며, 이는 99.4.1 시행된 동 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충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조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동 호 단서규정인 안전성 평가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동 충전소 설치당시의 규정에 의한 안전거리를 적용하게 됨 (7.26)

그린벨트내 충전소 거리 관련

Q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4조 2호의 규정에서 자동차용 LPG충전소간의 간격은 동일 방향별로 5k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사이에 일반지역이 있을 경우



질문1) 개발제한구역 사이의 거리인 1km를 제외하여 개발제한구역내 총연장을 5.3km로 할 수 있는지

질문2) 아니면 일반지역을 거치면서 앞지점인 개발제한구역내 1km를 인정하지 않고 4.3km만 인정하여야 하는지? (5.17)

A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자동차용 LPG충전소의 설치를 위한 배치계획 수립시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도로가 일반 지역(속칭)에 의하여 끊기는 경우에는 각각의 도로로 보게 되며 이는 합산하지 않음. 귀 경우는 질문2가 맞다고 봄. (5.27)

LPG충전소 보호시설 해당여부

Q 충전소 신축허가를 진행하는중 50m 안전거리내에 용도가 창고인 건물(면적194.4㎡)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 건축

물이 보호시설에 해당되는지 (7.25)

A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해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가설건축물을 제외한다)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00㎡이상 1천㎡미만인 것』인 경우는 제2종보호시설에 해당되며, 여기서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작업등을 목적으로 사람이 상시 건축물 내에서 근무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질의하신 동 창고가 필요시에만 출입하며 상시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니라면 동 보호시설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한 최종판단은 당해 허가관청이 현장을 실사하여 작업빈도, 인원 및 상주여부 등 구체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임(7.31)

LPG판매사업자의 별크공급시 안전관리자 채용

Q 판매업 허가를 가지고 있는데 장소를 이전하여 용기사업은 하지않고 별크사업만 할 경우 용기창고가 필요한지와 안전관리자도 별크사업쪽에 1명만 채용하면 되는지 (5.30)

A LPG법 제2조제4호의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에 기존의 용기판매사업 외에 일정규모이하의 별크사업(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의한 판매)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이는 용기에 의한 판매 없이 별크사업만 하도록 허용된 것은 아님. 따라서 LPG판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5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

합하게 시설을 갖추어야 함.

동법시행령 별표2의 규정에 의해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로 판매하는 시설이 포함될 시는 기존의 LPG가스판매시설 및 영업소의 안전관리자(안전관리총괄자 1인, 안전관리책임자 1인이상) 외에 별도로 안전관리원 1인이상을 선임하여야 함. (6.7)

주유소 캐노피의 LPG법상 보호시설 해당여부

Q 주유소의 캐노피가 LPG법시행규칙 별표1의 제2종보호시설(100㎡이상임)에 포함되는지

- 1.현재 캐노피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음.
- 2.현재 주유소 영업중이라 캐노피에 사람들이 상시 근무함. (7.22)

A LPG법시행규칙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제2종보호시설은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하는 규정이며 주유소의 캐노피의 경우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로 볼 수 없어 동 보호시설에 해당되지 않음 (7.26)

LPG충전시설의 경계책 설치권

Q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2장 제2관 액화석유가스공급시설의 경계책및 경계 표지에서 제 2-1-5조(경계책) 내용중 저장설비및 가스설비를 설치한 장소주위에는 높이 1.5m이상의 철책 또는 철망등의 경계책을 설치하여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도록 해야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저희가 공사중인 현장의 사업소 경계 한쪽면

(석축)이 지면(하천을 끼고있는 농로)보다 높은 곳은 2.5m,낮은곳은 1.9m정도 높게 되어있어 이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경계책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6.15)

A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2-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계책은 가스설비 및 저장설비를 설치한 장소 주위에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도록 설치하는 것이며, 사업소경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사항임 (6.21)

그린벨트내 기존 충전소 임대운영중 추가 증축 여부

Q 그린벨트내에서 운영중인 충전소를 매수하여 현재 운영중인 사람으로 운영상·안전상의 이유로 충전기를 증설하려고 함. 허가 당시에는 3,000㎡였으며, 증설할 경우는 뒤쪽 땅 180㎡ 만 있으면 안전거리가 확보되는데, 개발제한구역내에 위치하였기에 허가 득할 당시와 사업부지 면적이 틀러지면 아니되는 것인지, 아니면 3,300㎡의 면적만 넘어가지 않으면 되는 것인지. (5.18)

A 개발제한구역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부지면적은 3300제곱미터까지 형질변경이 가능하지만, 충전소의 설치는 지정당시 거주자나 도심내 충전소를 이전·설치하는 당해 사업자에 한하여 그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충전소를 자격이 없는 자가 인수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당초 시설의 한도내에서 운용은 가능하나 추가 증축이나 부지조성 등은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5.27)

보호시설까지의 안전거리 관련

Q 최근 입법예고된 LPG충전소로부터 보호시설까지의 안전거리 50m가 신규허가 및 사업소이전에 따른 변경허가시에만 적용된다고 하는바, 이 경우 기존 충전소의 경우에는 보호시설까지의 안전거리가 구법(30m)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인지와 만약 구법의 안전거리를 적용받는다면, 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 평가에 합격할 경우 구법의 안전거리 내에서 충전기(디스펜서)의 증설이 가능한지 (7.22)

A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충전기의 증설은 LPG법시행규칙 제4조제4호 후단규정인 가스설비의 수량증가에 해당하고, 이는 안전성평가대상이 아닌 변경허가대상이며, 동 변경허가시는 현행 LPG법시행규

칙 별표3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준수해야 함.

이와 관련하여, 동 별표3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의 규정중 2002. 7. 9일자 입법예고(안)에 포함되어 있는『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가목(1)(라)의 LPG충전시설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탱크로리이입·충전장소와 보호시설까지 유지하여야 할 안전거리(50m이상 유지) 기준』은 신규허가 및 변경허가사항(동 법 시행규칙 제4조 참조)중 사업소이전의 경우에만 적용하고 사업소 이전 이외의 변경허가에는 적용하지 않는 의미이고, 동 별표3의 제1호가목(1)(가) 내지 (다)의 규정인 「저장설비의 저장능력별 및 충전설비와 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로부터 사업소경계까지의 안전거리(24m 이상, 단 저장능력에 따른 거리증가 있음)」는 준수해야 함 (7.26)

이동식부탄연소기 안전사용요령

- 휴대용가스렌지를 사용할 때는 삼발이보다 큰 그릇을 올려 놓으면 열이 부탄캔에 전해져 폭발위험이 있습니다.
- 2대의 휴대용가스렌지 위에 커다란 철판 또는 과대불판을 얹어서 사용하면 부탄캔에 열이 가해져 폭발위험이 있습니다.
- 다 쓴 부탄캔은 반드시 구멍을 뚫어 화기가 없는 장소에 버리는 것을 잊지 맙시다.
- 화기 근처에 부탄캔 등을 방치하면 용기의 내압 상승에 의해 파열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 휴대용가스렌지 사용시 부탄캔 날개홈(U)을 위로 향하게 하고 렌지에 용기를 끼워 가스가 새는지 확인후 사용하십시오.
- 부탄캔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빼내어 직사광선을 피해 보관하고, 승용차에 휴대시 차량 내부온도 상승으로 폭발위험이 있으니 주의 하십시오. <자료:가스안전공사>

